

「구미시 진학·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에게 진학·진로교육 및 상담,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진학·진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진학·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목적,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진학·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(안 제3조)
- 진학·진로 지원센터 설치, 조직 및 인력(안 제4조, 제5조)
- 진학·진로 지원센터 이용대상, 이용료 및 반환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- 진학·진로 지원센터 위탁운영, 지도·감독 (안 제9조, 제10조)
- 진학·진로교육 협의체 구성, 준용(안 제11조,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제18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- 합 의 : 정책기획과장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·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청소년들의 진학·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탐색·체험 및 그에 따른 지원 등 전문화된 진학·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,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- 다만, 학생들의 진학·진로교육 활성화는 교육청 및 지원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 및 지원협의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.